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47
----------	-------

발의연월일 : 2025. 12. 4.

발 의 자 : 김한규 · 임호선 · 진선미
이원택 · 박상혁 · 박정현
김태년 · 이용우 · 위성곤
진성준 · 최혁진 · 문대림
박홍배 · 양부남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직접 결성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되어 투자와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 운용 기능이 벤처투자회사에 집중되는 구조임.

그런데 해외 주요국은 조합마다 운용전문회사를 두는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해외 투자자는 국내 조합의 운용 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출자 심사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현행 구조는 조합 단위로 책임이 분리되지 않아 운용인력의 성과를 개별 조합의 실적과 연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요건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여 조합 단위의 운용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해외 투자자의 검토 부담을

줄이고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며, 조합별 책임운용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벤처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 집행을 위하여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요건과 업무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37조 및 제38조의2).

다.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설립·운영요건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라.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통하여 운용하는 조합의 출자금액을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산정에 포함하고,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업무의 일부를 벤처투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및 제52조).

마. 보고 및 검사 대상에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추가함(안 제72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란 벤처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를 말한다.

제3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을 위한 투자조합운용전문
회사의 설립 및 운영

제38조제1항 중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
자금액의 합을 말한다)의”를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
자조합의 출자금액(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운용하는 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한다)의 합을 말한다]의”로, “제4호까지”를 “제4호의2
까지”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① 벤처투자회사는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벤처투자회사 및 그 소속 임직원이 합하여 100퍼센트 출자한 회

사일 것

2.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는 설립 후에도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는 1개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새로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④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1.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2. 제1호의 업무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설립 및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유한회사인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사원총회 결의는 「상법」 제57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원의 동의를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⑦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제49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업무집행조합원”을 “업무집행조합원(벤처투자회사가 설립한 투자조합 운용전문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5의2.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제5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51조제3항 중 “벤처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그 벤처투자회사가 설립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인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는 벤처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한 벤처투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7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10. (현행과 같음) <u>10의2.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u> <u>란 벤처투자회사가 벤처투자</u> <u>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을</u> <u>위하여 설립한 회사를 말한</u> <u>다.</u>
11. ~ 13. (생 략)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4. (생 략) <u><신 설></u>	11. ~ 13. (현행과 같음) 제37조(벤처투자회사의 등록) ①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u> <u>업무의 집행을 위한 투자조합</u> <u>운용전문회사의 설립 및 운영</u>

5. ~ 8. (생략)

② ~ ⑤ (생략)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①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① -----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운용하는 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한다)의 합을 말한다]의-----

-----제4호의2까지-----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① 벤처투자회사는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벤처투자회사 및 그 소속 임직원이 합하여 100퍼센트 출자한 회사일 것

2.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는 설립 후에도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는 1개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새로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④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1.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2. 제1호의 업무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설립 및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유한회사인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사원총회 결의는 「상법」 제57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⑦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① -----

-----.-----.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 7. (생 략)

8.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
합원으로서 제52조를 위반하
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9. ~ 1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
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
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
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2. (생 략)

<신 설>

3. ~ 7. (생 략)

5의2.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투
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하
거나 운영한 경우

6. · 7. (현행과 같음)

8. -----업무집행조
합원(벤처투자회사가 설립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가 업무
집행조합원인 경우를 포함한
다)-----

9. ~ 1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3. ~ 7. (현행과 같음)

상황을 확인·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료 하여금 투자실적 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5. ~ 7. (생략) ② ~ ④ (생략)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u>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